

## ■ 정책 동향 ■

##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14일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질적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투자자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 증권사의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 증권사의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에 따른 업무영역 특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모든 업무영역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① 자본시장의 기업금융기능 강화(종합금융투자사업사의 신용공여 한도 및 건전성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금융기능 강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사모증권의 발행 및 유통규제 완화 등), ②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업무 허용,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허용 등), ③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정보교류차단장치의 단계적 정비, 증권사의 인수업무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PF대출에 대한 3개월 만기제한 폐지 등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방안은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걸쳐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보도자료